
유네스코 세계유산국제해석센터 운영 및
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용역
과 업 내 용 서

2020. 7.

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

- 목 차 -

I. 과업의 개요	1
1. 과업명	1
2. 배경 및 필요성	1
3. 목적	1
4. 과업 내용	1
5. 과업 기간 및 예산	1
II. 과업수행 일반사항	2
1. 일반사항	2
2. 과업 추진 방법	2
3. 자문위원회 운영	4
4. 과업 변경 조건	4
5. 과업 해지 조건	5
6. 과업 보고	5
III. 과업수행 세부내용	6
IV. 성과품 납품 및 기타사항	8
1. 납품자료 제출 목록	8
2. 기타사항	8

1. 과업명 : 유네스코 세계유산국제해석센터 운영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

2. 배경 및 필요성

- 한국 정부는 세계유산협약 근거, 세계유산의 해석에 관한 연구를 통한 세계유산 목록의 지원 및 역량강화 기여를 위해, 세계유산국제해석센터 설립제안서를 제출하고, 제40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설립이 최종 승인됨
- 센터의 주요 기능은 △세계유산의 해석 기준과 원칙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, △세계유산 해석과 해설 분야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, △세계유산 해석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디지털 기술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임
- 공식 설립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센터 설립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, 국내외 세계유산 분야 동향을 반영해 센터 주요 업무와 기능을 확정하고, 그에 따른 예산과 조직 구성이 필요함
- 또한 주요 기능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개발 및 프로그램 개발 가이드라인 설정을 통해 센터의 기능과 목적을 유지하면서 세계유산 해석 분야의 선도적 역할과 영향력 확립 및 센터의 위상 강화 기대

3. 목적

- 센터 설립 및 운영 효율성 제고 기반,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
- 주요 기능 실현을 위한 사업 개발 및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설정

4. 과업 내용

- 과제 1. 유네스코 세계유산해석센터 인력 및 운영 실행 계획 수립
- 과제 2. 센터 사업 개발 및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설정

5. 과업 기간 및 소요예산

- 과업기간: 계약체결일 ~ 2020. 12. 10.
- 소요예산: 99백만원

1. 일반사항

-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해야 하며, 착수시 과업 참여자 명단, 과업 진행계획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본 과업수행에 참여한 연구진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과업참여자명단에 명기된 연구원이 참여하고, 과업 특성을 감안하여 국제법 및 IT분야 전문가를 참여토록 한다. 단, 퇴사 등 부득이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 교체할 수 있다.
- 발주처는 과업수행자가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 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연구원(참여자)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, 이로 인한 과업 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.
- 과업수행에 필요한 관련 자료는 최신 자료를 충분히 조사 활용하며, 인용한 자료는 출처를 명기하여야 한다.

2. 과업 추진 방법

- [관계법규 준수]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와 본 지침서, 특히 과업 세부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과업을 충실히 시행하여야 하며 관계법규와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[과업진행 보고]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과업의 진도 및 현황에 대하여 수시로 센터에 보고하여야 하며 센터의 보고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. 또한, 과업의 주요내용, 세부추진일정 및 현지 조사계획 등에 관하여 본 지시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센터와 협의한 후 수행하여야 한다.
- [협의사항]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, 과업

수행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제반사항, 본 과업내용서의 해석 및 관계 규정의 적용 등에 대하여 센터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의견이 엇갈릴 경우에는 센터의 결정에 따른다. 또한, 협의된 내용은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- [의견수렴]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센터가 요구하는 내용은 과업에 반영토록 하며, 특히 의견이 상충된 부분에 대하여는 센터의 의견에 따르며 협의된 내용은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- [성과물 등 제출]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에 있어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제반 성과물을 작성하여야 하며 센터의 요구(설명 또는 자료제출)가 있을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3. 자문위원회 운영

- 연구효과를 높이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를 포함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 수행 과정상의 주요 내용을 검토·심의하여야 한다.
- 자문위원회의 위원 선정은 센터와 협의하여야 한다.

4. 과업 변경 조건

- 상위계획 및 센터의 사정에 의한 계획변경으로 과업의 범위가 증감될 때에는 센터와 과업수행자는 상호 협의 하에 과업 범위, 내용 등을 조정할 수 있다.
- 본 과업 수행 중 과업내용의 변경요인이 발생하거나, 계약금액 결정에 명백한 하자 또는 착오를 발견하거나 기타 계약금액의 조정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센터와 별도 협의 하여야 한다.
- 본 과업 수행 중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원활한 과업추진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시는 센터와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중지 또는 연장 할 수 있다.
- 다음사항에 대하여는 센터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.

-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본 과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- 과업내용서에 명기된 사항이나 센터의 정책변화 등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과업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항

5. 과업 해지 조건

- 아래의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지함에 있어 과업수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, 이에 따른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.
 -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본 용역을 양도한 경우
 -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내용을 이해하지 아니한 경우
 - 계약체결 후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, 제안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
- 계약이 해지된 경우 제안서에서 제시한 인계방안을 준용하여 용역업무 및 적용기술을 빠짐없이 인계하여야 한다.
- 용역업체 과실이 빈번하게 발생되어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본 계약은 해지 가능하다.

6. 과업 보고

- 제안사는 용역수행의 효율적인 진도관리를 위하여 용역추진사항을 다음과 같이 센터에 보고하여야 함.

단, 일정은 상호 협의에 의해 변경 가능

 - 착수보고회 :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(과업수행계획서 등)
 - 수시 보고 : 센터의 요청사항, 필요사항 등에 대한 보고
 - 중간보고회 : 착수일로부터 4개월 이내, 용역완료 2개월 전 2차 중간보고 시행
 - 최종보고회 : 용역 종료 14일 이전 전체 추진단계의 수행결과 보고

Ⅲ

과업수행 세부내용

□ 과제명: 유네스코 세계유산국제해석센터 운영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

1. 센터 운영 목표와 전략

- 센터 비전 및 전략 체계 수립
- 센터 경쟁력 진단 및 사업효과 제고 방안 제안

2. 정책환경 분석 및 국내외 사례 조사

- 유네스코 차기 중기전략(C/4, 2022~2029), 사업 및 예산계획 (C/5, 2022~2025) 초안 분석
- 세계유산 국제협력 현황
 - 자문기구(ICOMOS, ICCROM, IUCN) 국제협력사업 현황
- 관련 기관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‘세계유산 해석’ 분야 현안 및 미래 과제 조사
 - ※ 설문 내용 및 대상자(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등)는 센터와 협의 후 시행
- 연속 유산, 디지털 유산 등 세계유산 해석 관련 국제적 담론 및 이슈
- 모범사례 조사 및 미래 과제 제시
 - ※ 세계유산 C2센터 연간 활동보고서, 각 커리큘럼 및 교육자료 참고

3. 사업 개발 및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제시

- 주요 기능 분석 및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제시
 - 세계유산의 해석 기준과 원칙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
 - 세계유산 해석과 해설 분야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
 - 세계유산 해석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
 - 디지털 기술 지원 업무

4. 중장기 발전계획(2021~2029) 수립

- 센터 미션, 비전, 전략 제시
- 센터 운영 로드맵 제시
 - 센터 운영 단계별 미래비전 제시
- 핵심전략 사업 추진 방향 제시 및 사업 적정성 검토
 - 핵심전략 사업에 대한 단계별 이행방안 및 성과지표 제안
 - ※ 유네스코 세계유산 역량 강화 전략 및 연간 활동보고서 양식 고려

5. 조직 및 운영 설계

- 센터 운영 계획 수립
 - 유사기관 사례를 통해 벤치마킹 실시
 - 중점 기능 수행을 위한 최적의 수행인력 등 조직 설계
 - 운영조직 세부사항 설정
 - 홍보방안

6. 기타 센터가 요청하는 사항

- 세계유산국제해석센터 중장기 발전계획 소개 PPT 및 요약집 제작(국·영문)

1. 납품자료 제출 목록

구분	규격	수량	제출일정
착수계	A4	1부	· 계약체결 후 7일 이내
요구사항정의서	A4	2부	·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
중간보고서	A	10부	· 중간보고 후 14일 이내
최종보고서	A4	50부	· 사업완료시까지 (사업설명 PPT 포함)
보고자료	A4	50부	
관련자료 및 USB	-	2식	

2. 기타사항

- [신의성실원칙]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. 동 과업내용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센터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조한다.
- [과업수행자 변경통지] 과업수행자는 책임연구원을 비롯한 연구진의 변경 시 신속히 센터에 통지하여야 한다.
- [성과물 수정·보완] 과업수행자는 성과물이 과업내용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미흡하여 센터에서 보완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·보완하여야 하며, 본 과업 완료 이후라도 본 과업과 관련한 발주처의 재검토 및 보완 요구사항 등에 대하여 별도의 용역비 청구 없이 제반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- [지적재산권 양도] 과업수행자는 지적재산권의 양도 등과 관련하여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.
 - 과업수행자는 ‘유네스코 세계유산국제해석센터 운영 및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’ 과업 수행으로 발생한 저작물에 대한 모든 저작권(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)을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에 양도한다.

-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는 위의 저작물에 대해 수정, 변경하여 이용할 수 있고, 과업수행자는 저작권권을 근거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.
 - 과업수행자는 위의 저작물을 작성하면서 저작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과업수행자가 위의 저작물 작성과 관련해 저작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인하여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 -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가 위 사항에 따라 양도받은 지적재산권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.
- **[분쟁조정]** 과업수행 중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와 과업수행자 간의 이견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하되 발주기관의 해석이 우선한다.
- **[비밀준수 및 보안관리]**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보안유지를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교육, 보안대상에 대한 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.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알게 된 모든 정보에 대하여 계약기간 전후 및 장소를 불문하고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,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민·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.
- **[개인정보보호]** 과업수행자는 위탁업무 수행 목적 및 범위 외 개인정보의 처리를 금한다. 과업수행자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재위탁을 금한다. 과업수행자는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및 계약상대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전적인 배상 책임을 짐. 과업수행자는 위탁받은 개인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변조 또는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, 위탁자가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위해 실시하는 감독 및 점검에 응해야 한다. 아울러 과업수행자의 고의 또는 과

실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센터는 동법 제26조 및 제39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 끝.